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2. 17 선고 2020나1079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2. 17 선고 2020나10799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2 선고 2018가합1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동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건우

변론 종결 2020. 10. 29.

판결 선고 2020. 12. 1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2. 선고 2018가합1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169,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3쪽 8줄의 '2014노5'를 '(전주)2014노5'로 고치고, 같은 쪽 12줄의 '2015. 12. 22. 선고'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8줄의 '피고 직원들인 I, J의 행위는 곧바로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되므로'를 'I, J은 피고의 현장소장 및 공사차장으로 이 사건 E 1공구 F지구사업장 공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이 사건 준설토를 피고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5쪽 6줄의 '하고' 다음부터 같은 쪽 8줄 '없는 점'까지를 '이에 반하여 I, J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점(원고들은, I과 J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준설토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매매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인식과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는 서로 무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I과 J이 피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매매대금의 수령 및 반환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관련 형사,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2줄의 '없는 점' 다음에 '(원고들은, 1이 2012. 11. 8. 원고 B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경미

판사박세진

판사장인혜